**내 용 증 명**

발 신 인 ○ ○ ○

주 소

수 신 인 ○ ○ ○

주 소

**임대차계약 해지 통고**

1. 발신인은 수신인과 0000년 00월 00일, 아래와 같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임대목적물 : 00시 00로 00번 000호 상가

임차보증금 : 금 00,000,000원

월 임대료 : 금 000,000원

임대차기간 :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

2. 수신인은 0000년 00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, 이에 발신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등 수 차례 연체된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현재 총 연체된 임대료 000원은 3개월분을 초과하여 3기 연체에 해당합니다.

4.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본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0000. 00. 00.까지 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시고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만일, 위 기간까지 원상회복하여 상가를 명도하지 못할 경우,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, 이러한 법적 조치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20○○. ○. ○.

위 발신인 ○○○